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 심사보고서

2016년 3월 일 도시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6. 3. 21.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제173호)

나. 회부일자 : 2016. 3. 21.

다. 상정일자 : 제24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016. 3. 24. 상정·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 가. 제안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안암동3가 136-1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O 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 변경없음

구분	동명	지 번	면적(ha)	계획용적률	건폐율	층 수	비고
기정	안암동3가	136-1	1.6	190% 이하	60% 이하	12층 이하	

## O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

구 년	<u>=</u> -	면 적 (㎡)	비율 (%)	미고
합 )	11	15,124.2	100.0	
	소 계	1,400.0	9.3	
정비기반시설 등	공 원	898.0	5.9	소공원
	도 로	502.0	3.4	
āl TI	소 계	13,724.2	90.7	
획 지	획 지	13,724.2	90.7	공동주택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 가. 위 사업구역은 안암동3가 136-1번지 일대로, 2025 서울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면적은 15,124.2㎡이고, 건축물 노후화는 87.7%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임. 특히 구역 내 위치한 공동주택(대광아파트)의 경우 97년 10월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재건축 판정을 받아, 98년 6월 인근 주택지를 포함하여 조합설립인가(도정법 이전)를 받은 바 있음.
- 나. 2006년 3월(202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 3월 성북구의회 의견청취(원안가결)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였으나, 같은 해 1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인근 재개발 예정구역을 포함하는 정비구역 조정" 의견이 제시되어 본 사업구역의 정비구역지정이 보류되었음. 심의의견을 일부 반영·보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절차에 따라 2015년 4월부터 11월까지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2016년 1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음.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09.12.22.) 의견 및 조치

심의의견	조 치 계 획		
• 북측 단독주택지 및 고려대학교 인접 재개발 예정구역을 포함하는 정비구역 조정 검토	• 대상지 북측 단독주택지 등을 포함하기 위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2011.05.04.),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12.04.04.) 등 기본계획 변경관련 절차를 이행하였 으나 대부분 양호한 건축물에 해당되어 노후・불량 건축 물이 밀집한 고려대 연접부 만을 정비구역에 포함하였음	일부 반영	
상정안(2009.12) 후백재건홍정네예정구역	(2012.04) 도우 불량건축물 양호한건축물 고려대학교 복축 단독주택지 (C시역)	4)	

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 일부를 반영한 정비계획을 살펴본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에 비추어 볼 때, 정비계획안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법적 요건을 충족하며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 및 정비기반시설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 구역지정요건 충족

- 대상지는 노후·불량건축물 노후화 87.7%로 해당됨
- 대상지는 기존세대수가 총 408세대, 계획세대수 445세대로 300세대이상에 해당됨
- 대상지는 부지면적이 15,124.2m'로 **1만m'이상에 해당됨**
- 대상지 내 공동주택의 경우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됨**
- 라. 정비계획 주요내용으로는 용도지역 변경은 없으며,

도시계획시설로 주민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고자 소공원(898㎡)을 신설하고, 구역 외 주변도로(502㎡)를 확장하여 기부체납(순부담율 1,331.5㎡,10.5%)토록 하였음. 공동이용시설(1,483.26㎡)로는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어린이놀이터 등이 계획되었으며,

건축시설계획의 건립 세대수는 임대주택 34세대 포함 총 445세대로, 60㎡이하 378세대(84.9%), 85㎡이하 67세대(15.1%)이며, 건폐율 20.18%, 용적율 249.92%, 기부체납 10.5% 조건으로 층수는 평균 13층 이하로 계획하였음.

주차시설은 445면을 계획하여 법정주차대수 377면 보다 68면을 상회하도록 계획되었음.

마. 위와 같이 살펴본 바, 위 사업대상지는 노후·불량건축물로 인해 주거 환경 등이 열악한 지역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을 수립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의견 없음(2016. 02. 01.~ 2016. 03. 02.)